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등 의무 부여〉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0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등 의무 부여	2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6.
- (3) 회 부 일 : 2025.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등 의무 부여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i) 식품등을 조리·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44조의3제1항),
 -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식품위생관리자’를 두도록 하며(안 제44조의3제2항),
 - iii) 가맹본부의 장과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3항).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맹본부가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101조제3항).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식품등을 조리·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가맹본부”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점사업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②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가맹본부의 장 및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
방법과 식품위생관리 기술·정
보의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

[illegible]

다.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u>13의2. 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u>
14. ~ 20. (생략)	1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3.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에 따르면, 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함.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²⁾에 따르면, 가맹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외식업종으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8,976개 가맹본부 중 6,875개,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식업종 가맹본부 수는 2022년 6,308개에서 2024년 6,875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업종별 가맹본부, 브랜드 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 분		외식			서비스			도소매			계 (개수)
		개 수	비 중	증감률	개 수	비 중	증감률	개 수	비 중	증감률	
가맹 본부	2022년	6,308	75.7	11.4	1,475	17.7	9.6	554	6.6	10.4	8,337
	2023년	6,822	76.2	8.1	1,571	17.6	6.5	550	6.2	△0.7	8,943
	2024년	6,875	76.6	0.8	1,578	17.6	0.4	523	5.8	△4.9	8,976
브랜드	2022년	9,442	79.7	4.9	1,797	15.2	8.1	605	5.1	8.6	11,844
	2023년	9,934	79.9	5.2	1,900	15.3	5.7	595	4.8	△1.7	12,429
	2024년	9,873	79.8	△0.6	1,933	15.6	1.7	571	4.6	△4.0	12,37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전체 가맹본부 수와 상이함.

2)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공정위 보도자료, 2025. 4. 9.)

- 업종별 가맹점 수 비중도 외식업종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 167,455개에서 2023년 기준 180,942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업종별 가맹점 수, 브랜드별 가맹점 수〉

(단위: 개, %)

구 분		외식			서비스			도소매			전체 (개수)
		개 수	비 중	증감률	개 수	비 중	증감률	개 수	비 중	증감률	
가맹점 수	2021년	167,455	49.9	23.9	101,124	30.2	36.0	66,719	19.9	9.4	335,298
	2022년	179,923	51.0	7.4	104,134	29.5	3.0	68,809	19.5	3.1	352,866
	2023년	180,942	49.6	0.6	114,505	31.4	10.0	69,567	19.1	1.1	365,014
브랜드당	2022년	18.1개			54.8개			115.6개			28.4개
가맹점수	2023년	18.3개(1.1%)			59.2개(8.0%)			121.8개(5.4%)			29.5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4.9.)

- 주요 세부업종별로는 한식업종의 가맹점 수가 41,353개로 2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치킨(29,711개, 16.4%), 커피(27,974개, 15.5%), 주점(9,591개, 5.3%), 제과제빵(8,842개, 4.9%) 업종이 그 뒤를 이었음.

〈외식업종 중 주요 세부업종별 가맹점 수〉

(단위:개, %)

구분	치킨	한식	커피	제과제빵	피자	주점	외식업 전체
2021년	29,373	36,015	23,204	8,779	8,053	8,638	167,455
2022년	29,423	39,868	26,217	8,918	8,403	9,379	179,923
2023년	29,711	41,353	27,974	8,842	8,091	9,591	180,9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4.9.)

- 개정안은 가맹사업 형태의 외식업 증대와 함께 이들 가맹점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위생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³⁾하고 있으므로,

3) “믿고 먹었는데 실망이네”...식품 프랜차이즈 위생 논란(한경BUSINESS. 2023.10.3.), 햄버거·치킨 주요 프랜차이즈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33건(여성신문, 2023.9.27.)

i)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기술·정보 등을 가맹점사업자(그 종업원 포함)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ii) 가맹본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자를 두도록 하며, 가맹본부의 장과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위생에 관한 가맹본부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임.

□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등) 상당수의 외식업영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396건에서 2024년 539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에 대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역할(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시행, 식품위생 기술·정보의 제공)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식업 전반의 식품위생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 건)

위반유형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기준 및 규격 위반	149	206	202	178	230	965
위생교육 미이수	92	63	163	196	147	66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	44	66	52	69	272
건강진단 미실시	40	39	29	37	30	17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5	37	21	32	32	157
영업 변경 신고 위반 등	30	19	20	23	9	101
시설기준 위반	9	21	13	8	22	73
위해식품등 판매 등 금지 위반	-	-	2	1	-	3
계	396	429	516	527	539	2,407

*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상위 10개 업체(매장 수 기준)를 대상으로 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만, 안 제44조의3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및 기술·정보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맹본부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직영점은 이러한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가맹본부의 범위를 “식품등을 조리·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통상 식품등을 직접 조리·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 제3조제3항⁵⁾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식품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을 외식업종 가맹본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2023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종에 한하여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19개, 500개 이상이

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4개, 100개 이상이 325개에 달하는바,⁶⁾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맹본부 범위 관련 입법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 3. (생략)

□ (식품위생관리자 선임의무 부여) 안 제44조의3제2항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영업자가 안 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지 아니

6) < 2023년 기준 식품 관련 가맹본부 및 가맹점 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통계)>

가맹점 수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가맹본부 수
1,000개 이상	19개	100개 이상	325개
500개 이상	54개	50개 이상	723개

* 본 통계는 영업표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의 영업표지의 가맹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맹본부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식품위생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식품위생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가맹본부는 현행법상 ‘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가맹본부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맹본부에 두는 식품위생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인력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본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격기준이나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41조의2⁷⁾에서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7)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③ 공유주방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장 및 식품위생관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안 제 44조의3제3항에서는 가맹본부의 장 및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1조제3항에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41조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보존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제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⁹⁾,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식품위생법」 상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9) 참고3. 식품위생교육현황 참조(20p)

영업자가 아니므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런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¹⁰⁾에서 그 특성과 역할에 부합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장과 식품위생관리자 모두에게 식품위생교육 수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양자 각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41조¹¹⁾에서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11)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위생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가맹본부의 범위·규모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가맹본부에 일정 자격을 가진 식품위생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 관리자의 역할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식품위생관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맹본부의 장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복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통제·교육하는 시스템 특성상 가맹본부 대상 교육은 매우 중요함. 가맹본부가 정확한 정보와 지침에 따라서 가맹점 위생관리와 지원을 실시할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와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게 됨.
- 아울러,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위생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도 필요함.

□ 한국식품산업협회:

- 가맹본부의 관리 강화에 대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가맹본부의 기존 관리체계와 위생문제 발생 구조를 고려하여 제도의 실

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예를 들어 위생교육 실태조사, 위생등급제 우대 혜택 등)이 필요함.

- 가맹본부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위생관리 미흡 등의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강화가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됨.

□ 한국외식업중앙회:

-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대한 식품위생 프로그램을 갖추고, 가맹점에 전달 및 점검하는 등 입법 과잉으로 보이며, 직영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영업 신고를 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익이 전무(全無)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제안 사유의 목적을 이루려면 현행 식품위생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식품위생 의식 향상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각각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식품위생 위반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부분임. 현행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통해서 관리 운영이 가능함.

□ 한국외식산업협회:

- 개정안은 특정 협회의 독자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으로 흐를 우려가 있으며, 특혜 소지가 있어 제고가 필요함. 또한, 식품위생관

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특정 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모든 식품위생교육을 독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바람직하지 않음.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위생관리 책임을 가맹본부까지 명시적으로 부과할 경우 권한을 넘는 과잉 책임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미 「식품위생법」상 대상으로, 가맹본부까지 법적 관리의무를 추가할 경우 이중 부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00

참고1

2024년 가맹사업 세부 업종별 주요 현황

〈표 1〉 프랜차이즈 업종 구분

업종	세부업종
외식업 (15개)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
도소매업 (7개)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서비스업 (22개)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유아 관련,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표 2〉 주요 외식업종 현황

구분	치킨	한식	커피	제과제빵	피자	주점
가맹점 수	29,711개	41,353개	27,974개	8,842개	8,091개	9,591개
브랜드 수	647개	3,701개	851개	303개	239개	523개
개점률	13.6%	32.0%	19.0%	11.9%	13.2%	21.3%
폐점률	12.1%	19.0%	9.8%	9.5%	13.1%	14.2%
가맹점 평균 매출액	312백만원	357백만원	234백만원	323백만원	300백만원	320백만원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4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매출액은 '23년 말 (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 (이하 같다)

〈표 3〉 주요 서비스업종 현황

구분	외국어교육	교과교육	이미용	세탁	운송
가맹점 수	15,991개	10,171개	5,252개	4,096개	13,214개
브랜드 수	142개	79개	297개	29개	36개
개점률	12.9%	18.4%	13.9%	9.5%	44.0%
폐점률	12.4%	23.2%	8.7%	5.1%	4.3%
가맹점 평균 매출액	106백만원	74백만원	389백만원	101백만원	-

〈표 4〉 주요 도소매업종 현황

구분	편의점	화장품	건강식품	농수산물
가맹점 수	55,711개	1,071개	943개	254개
브랜드 수	39개	15개	30개	29개
개점률	11.2%	2.8%	1.7%	9.1%
폐점률	7.2%	28.0%	1.7%	15.4%
가맹점 평균 매출액	568백만원	230백만원	457백만원	301백만원

참고2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 신규개점 수, 평균 매출액 상위 5개 업체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자료 추가 확인 가능

(단위:개, 천원, 23년 말 기준)

구분		가맹점 수		신규개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업종	순위	브랜드	수치	브랜드	수치	브랜드	수치
치킨	1	비에이치씨(BHC)	2,291	비에이치씨(BHC)	461	교촌치킨	694,300
	2	BBQ	2,238	BBQ	182	비에이치씨(BHC)	546,729
	3	교촌치킨	1,377	가마치 통닭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119	갯튀김후라이드	509,053
	4	처갓집양념치킨	1,233			다사랑	508,701
	5	굽네치킨	1,118	아라치	96	구도로통닭	507,313
한식	1	본죽&비빔밥	1,003	본죽&비빔밥	180	소폴리스	2,819,438
	2	한솔	793	밥투브	150	샤브20	2,047,438
	3	본죽	647	일품양평해장국	149	청기와타운	1,960,905
	4	땅스부대찌개	594	대박삼겹김치찜 &초대박등갈비 김치찜	141	쌈마이대패	1,529,719
	5	두점	592	명륜진 사갈비	열정해 장국 121	진원 소우	1,519,751
커피	1	이디야커피	2,805	메가엠지씨커피 (MEGA MGC COFFEE)	539	투썸플레이스	522,117
	2	메가엠지씨커피 (MEGA MGC COFFEE)	2,681	컴포즈커피 (COMPOSE COFFEE)	474	PLUS 82(플러스82)	476,469
	3	컴포즈커피 (COMPOSE COFFEE)	2,360	뽕다방	241	백억커피	433,125
	4	투썸플레이스	1,484	텐퍼센트 스페셜티커피	217	탐앤탐스 커피 (TOM N TOMS COFFEE)	385,128
	5	뽕다방	1,449	매머드익스프레 스 (Mammoth Express)	201	에이바우트커피	368,597
제과 제빵	1	파리바게뜨	3,389	브라운베이글	93	파리바게뜨	710,758
	2	뚜레쥬르	1,307	뚜레쥬르	87	뚜레쥬르	563,448
	3	던킨/던킨도너츠	631	파리바게뜨	56	크리스피크림	500,617
	4	명랑시대쌀핫도그	525	복호두	46	한스(HANS)	481,124
	5	앤티앤스	213	던킨/던킨도너 츠	43	하르당	431,885
피자	1	피자스쿨	615	뽕보이피자	109	노모어피자	849,198
	2	피자마루	524	노모어피자	92	서오름피자	768,639
	3	피나치공 (피자나라치킨공주)	505	프레드피자	57	도미노피자	749,556
	4	오구쌀피자	408	피자먹다	55	잭슨피자	681,151
	5	도미노피자	369	피나치공 (피자나라치킨공주)	54	번쩍피자	643,006

※ 가맹점 평균매출액 순위는 가맹점수가 해당 업종 평균 이상인 브랜드만 대상으로 하여 선정

참고3

식품위생교육 현황

☐ (교육대상) 식품 영업자 및 유통주점 영업자의 종업원

☐ (교육종류)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구 분	교육대상	교육이수 시기	교육시간	행정처분
신규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신고 이전	4~8시간	시정명령/업무정지7일/15일
정기교육	영업자	매년	3시간	과태료 20만원/40만원/60만원

* 유통종사자: 매년 2시간,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시 3시간, 매년 3시

☐ (교육면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정기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소와 동일한 시·도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에 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제4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이수

- '21년부터는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21.1월 시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확산으로 시행시기를 유예('22년 9월까지 온라인 교육 가능)

☐ (교육내용)

-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기관 지정년도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판매업 등 16개 업종 영업자	1987년
동업자조합	② 대한제과협회	제과점 영업자	1993년
	③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1987년
	④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업 영업자	1993년
	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업 영업자 유흥주점업 유흥종사자	1993년
	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1993년
	⑦ 한국식용유지추가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영업자	2011년
	⑧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영업자	2011년
	⑨ 한국떡류식품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영업자	2011년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⑩ 한국외식산업협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영업(설치)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2014년
	⑪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휴게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2024년
⑫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2008년
⑬ 대한영양사협회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2008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